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3, 5832, 5831

- 1 ()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①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2018. 9. 4., 2020. 7. 28., 2021. 1. 5.>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그 증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한 후 해당 선박을 계류(이하 “계선”이라 한다)한 경우 그 선박
 2.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수상레저기구
 3. 2007년11월 4 일 전에 건조된 선박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 가.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평수(平水)구역(호소(湖沼: 호수와 늪)·하천 및 항내의 수역(「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이 지정된 항만의 경우 항만구역과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이 지정된 어항의 경우 어항구역을 말한다)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이하 “항만건설작업선”이라 한다)
 - 2) 여객운송에 사용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나. 추진기관 또는 돛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항하는 선박 중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 1) 항만건설작업선
 - 2) 압항부선(押航艇船: 추진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선박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부선을 말한다) 또는 잠수선 등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는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
- 다. 삭제<2015. 7. 6.>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소유자등”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의 계선기간 및 계선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1항제3호가목1)·2)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1)·2) 외의 부분 본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선박의 선박소유자등은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8. 9. 4.>
- 3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은 법 제4조부터 제11조까지, 법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법 제18조제9항, 법 제20조제3항, 법 제22조, 법 제26조부터 제44 조까지, 법 제60조제1항·제2항, 법 제71조 부터 제77조까지, 법 제80조, 법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 법 제88조 및 법 제89조로 한다. <개정 2010. 11. 24., 2018. 4. 30.>
- 4 ()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선박 : 해당 선박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정의 내용에 따른다.
 2. 법 제3조제3항제2호의 선박 : 법 제17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 법 제2조제2호의 선박시설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4 2() 법 제14조제4항에서 “측정장비,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체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30.]

5 ()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선박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임시변경증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임시변경증 또는 임시항해검사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1. 여객선안전검사증서·원자력여객선안전검사증서 및 원자력화물선안전검사증서 : 1년

2. 그 밖의 국제협약검사증서 : 5년

③ 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1. 최초로 법 제8조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계선(제2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종전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기산 방법은 제3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검사증서”는 “국제협약검사증서”로 본다.

6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정기검사 또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7. 6.>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3개월 이내

2. 해당 선박이 외국에서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검사를 받았으나 선박검사증서 또는 국제협약검사증서를 선박에 갖추어 둘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5개월 이내

3. 해당 선박이 짧은 거리의 항해(항해를 시작하는 항구부터 최종 목적지의 항구까지의 항해거리 또는 항해를 시작한 항구로 회항할 때까지의 항해거리가 1천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항해를 말한다)에 사용되는 경우(국제협약검사증서로 한정한다) : 1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약검사증서 중 국제방사능핵연료화물운송적합증서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7 ()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4.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8** 삭제 <2010. 11. 24.>
- 9** 삭제 <2010. 11. 24.>
- 10** () ①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 4. 30.>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1** ()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공단 및 선급법인이 별표 1의2에 따른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4. 30.>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2** 삭제 <2018. 4. 30.>
- 13** () ①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컨테이너검정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 등을 한 경우
 3. 대행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정 등의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4** ()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대행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항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 또는 승인을 한 경우
3. 대항지정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
4.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검사 및 승인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5 () 법 제67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8. 4. 30.>

1. 공단 : 3억원
2. 선급법인 : 50억원
3. 컨테이너검정등대항기관 : 3억원
4. 위험물검사등대항기관 : 3억원

16 () ①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이란 다음 각 호의 협약을 말한다. <개정 2018. 4. 30.>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만재흡수선에 관한 국제협약」
3. 「국제 해상충돌 예방규칙 협약」
4.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5.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6.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7.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

② 제1항제5호의 「상선의 최저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을 적용할 때 1994년 3월31일 이전에 용골(선박 바닥 중앙의 길이 방향 지지대를 말한다)이 거치된 선박에 대하여는 같은 협약의 적용으로 인하여 선박의 구조 또는 거주설비의 변경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항만국통제를 실시한다. <개정 2021. 1. 5.>

17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문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선박소유자·선급법인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8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8. 4. 30.>

1. 공단, 선급법인,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 컨테이너검정등대항기관 및 위험물검사등대항기관

2.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② 제1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을 받은 선박의 명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명(한글 또는 영어로 표기)
 2. 총톤수
 3. 선박번호 및 국제해사기구번호
 4. 선박소유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을, 용선의 경우에는 선박운항자의 명칭을 말한다)
 5. 외국 항만당국의 점검일, 항만명, 출항정지기간 및 출항정지 원인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명세를 공표하는 경우 공표 대상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19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시정·보완명령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0 ()**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5조제5항에 따라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을 하려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시정·보완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21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관할 구역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1. 24., 2013. 3. 23., 2015. 7. 6., 2018. 4. 30.>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외국선박(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된 후 외국에서 등록하였거나 외국에서 등록할 예정인 선박을 말한다)이 시운전을 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1의2. 법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두께측정지정업체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측정 업무의 정지와 그 고시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 및 그 변경승인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5. 법 제2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자체검사기준 등의 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지도·감독
 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취소 또는 그 정지처분
 7. 법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과 그 변경승인 및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8. 법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컨테이너 안전에 필요한 조치, 비용청구 및 비용충당
 - 8의2.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저장 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
 - 8의3. 삭제<2018. 4. 30.>
 9. 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
 10.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검사·재검정 및 재확인. 다만, 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이 행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11. 법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출항정지명령
 12.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명령
 13.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출입·조사
 14.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보
 15. 법 제75조제5항에 따른 항해정지명령 또는 수리·보완과 관련된 처분
 - 15의2. 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16.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7. 법 제8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삭제<2010. 11. 24.>

22 () 법 제8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 4. 30.>
[전문개정 2011. 4. 4.]

<제20300호, 2007. 9. 28.>

- 1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2 (사전운영계획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8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 3 (대행업무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4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 영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5 (협정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체결한 협정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협정내용 등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6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항질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16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만법」, 「공유수면관리법」 또는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공사 또는 작업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을 “「선박안전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으로 한다.

② 국제도로면세통과증서의담보하에행하는화물의국제운송에관한관세협약 및콘테이너에관한관세협약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③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④ 선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또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을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으로, ”검사협회 또는 선급법인“을 ”공단 또는 선급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⑤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선박안전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같은 호 나목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76조에 따른 선박검사관 및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 제2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 따라”로 한다.

⑥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⑦ 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박시설 중”으로 한다.

⑧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⑨ 수난구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4조의 규정에서”를 “「선박안전법」 제29조에서”로 한다.

⑩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안전법」 제76조 및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관 또는 선박검사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제33조제2항 중 “「선박안전법」 제6조의3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18조”로 한다.

38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41조제3항”으로 한다.

⑪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을 “「선박안전법」 제41조”로 한다.

⑬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2의 제목 중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각각 “「선박안전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선박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⑮ 해양사고의조사 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호나목 중 “선박안전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7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0722호, 2008. 2. 29.>(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제2항·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및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 및 단서·나목·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2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수산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21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를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장 소속 해양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62>부터 <138>까지 생략

<제22504호, 2010. 11.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2829호, 2011. 4. 4.>(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4 (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443호, 2013. 3. 2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6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본문·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3항제4호 단서,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제4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 및 제20조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19>부터 <146>까지 생략

<제26385호, 2015. 7. 6.>

이 영은 2015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8843호, 2018. 4. 30.>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9139호, 2018. 9. 4.>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건설기계(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에 따른 준설선에 한정한다)로서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하여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그 검사의 절차, 방법 및 시기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106호, 2019. 10. 8.>(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30876호, 2020. 7. 28.>(항만법 시행령)

1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14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선박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1) 중 “「항만법」 제29조의3제1항”을 “「항만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15 생략

<제31380호, 2021. 1. 5.>(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8. 4. 30.>

선체 두께측정업체의 지정기준(제4조의2 관련)

1.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선체두께 측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소를 갖출 것

나. 도장된 선체의 두께를 측정할 수 있는 펄스(pulse)반사법 측정장비[탐촉자(探觸子)를 사용하는 다중반사 방식의 디지털 측정장비를 말한다]를 갖출 것

2. 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초음파비파괴검사 분야 기능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선체두께 측정 업무에 종사하거나 선체두께 측정 관련 현장 실무교육을 받은 사람

나.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업무규정 기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업무규정을 갖출 것

가. 선체두께 측정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선체두께 측정위치의 선정 및 식별 등 측정준비에 관한 사항

다. 선체두께 측정 업무의 감독에 관한 사항

라. 선체두께 측정 결과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8. 4. 30.>

협정의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대항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조직

- 1) 검사의 수행, 검사기준의 개발 및 선박안전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갖추는 것
- 2)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추는 것

나. 검사원

-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제도를 갖추는 것

다. 기술개발

- 1) 검사기준을 개발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 2) 품질관리능력을 갖추는 것

라.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마. 경영체계

- 1) 이해관계 직무 회피, 입사 후 종전 근무지 관련 업무 배제 및 동일 민원지역 장기간 연속근무 제한,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교육 시행 등의 자체 실정에 맞는 윤리경영체계를 갖추는 것
- 2) 대항업무의 품질유지, 안전 확보, 환경오염 방지 및 공정성과 재정적 독립성 등의 보장을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갖추는 것

바. 그 밖에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2. 협정 이행에 관한 사항

가. 대항업무의 범위

나. 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로 지적된 사항의 통보

다. 검사대항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

- 1) 선박검사원의 선임 및 해임
- 2) 발급된 증서
- 3) 기술자료

라.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

마. 정부 또는 정부를 대신한 제3자의 정기적인 감사 수행

바. 기밀유지

사. 선박검사원의 자격

아. 협정의 개정

자. 손해배상책임

차. 협정해지요건

※ 비고

협정의 내용 중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의 대행범위, 감독방법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구상(求償)에 대비한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은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선박안전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 10.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1) 10일 이내의 기간이 지난 경우 2)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50만원 외에 매 1일 초과 시마다	법 제89조 제2항제1호		150 1	
나. 법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인된 도면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호	150	250	500
다.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검사증서등을 선박(소형선박은 제외한다) 안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3호의2	150	250	500
라. 법 제18조제8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 또는 변경승인시험에 합격한 선박용물건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4호	150	250	500
마.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복원성자료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7호	200	350	500
바. 선박의 선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3항	40	70	100
사.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8호	200	350	500
아.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항해용 간행물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9호	150	250	500
자.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타실의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0호	150	250	500
차.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타실과 조타기(操舵機)가 설치된 장소 사이에 통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1호	150	250	500

카.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2호	150	250	500
타.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한하중등의 사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를 사용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3호	150	250	500
파.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역설비검사기록부 등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4호	150	250	500
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화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5호	150	250	500
거.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유독성가스 또는 산소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機器) 및 이에 관한 사용설명서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6호	150	250	500
너.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7호	150	250	500
더.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19호	150	250	500
러.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의 복원성·화물의 성질 및 적재방법에 관한 정보를 선장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1호	150	250	500
머.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2호	150	250	500
버.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적재·운송 또는 저장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3호	150	250	500
서.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위험물의 적재·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않은	법 제89조 제2항제24호	200	350	500

경우				
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고 위험물을 취급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4호의2	150	250	500
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강화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5호	200	350	500
처. 법 제43조제3항을 위반하여 예인 선항해검사증서를 예인선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6호	150	250	500
커. 대한민국 선박의 소유자가 법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외국 항만 당국의 항만국통제로 인하여 출항 정지된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7호	200	350	500
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89조 제2항제28호	150	250	500

비고

가목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과태료 금액의 상한으로 한다.